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6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5.

발 의 자 : 전진숙·최혁진·손 술
양부남·문금주·이개호
정준호·전종덕·박홍배
오세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,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빠르게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한 가입기간 산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, 돌봄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 한 경우 해당 기간이 연금 가입기간으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. 이로 인해 돌봄을 수행한 당사자는 노후 소득 보장에서 구조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고, 그 부담은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음.

이에 본 개정안은 「돌봄기본법」에 따른 돌봄기본소득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도록 함으로써, 돌봄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하고, 돌봄으로 인한 노후 소득 불이익을 완화하고자 함. 아울러 해당 가입기간 추가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

액 부담하도록 하여,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3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돌봄기본법안」(의안번호 제 1662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3(돌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) ① 「돌봄기본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돌봄기본소득을 받거나 받았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(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돌봄기본소득을 받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. 다만,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.

제51조제1항제2호다목 중 “제19조”를 “제19조 및 제19조의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9조의3(돌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) ① 「돌봄기본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돌봄기본 소득을 받거나 받았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 금수급권을 취득한 때(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 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돌봄기본소득을 받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. 다만,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 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.</u>
제51조(기본연금액) ① 수급권자 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 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 하면 그 초과하는 1년(1년 미 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	제51조(기본연금액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으로 계산한다)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.

1. (생략)

2.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. 다만,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.

가. 나. (생략)

다.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
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
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
정한 금액

② · ③ (생략)

1. (현행과 같음)

[illegible]

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제19조 및 제19조의3----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